

의안번호	2205551
의 퇴 인	김주영의원
회 답 일	2024. 12. 11.
추 계 번호	24B508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제도 도입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원, 2030년 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원(연평균 1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안 제16조의 2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안 제16조의3 신설)	100	100	100	200	200	700	140

주: 1. 본 추계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제도 시행 경과에 따라 기업 참여 및 사업수가 초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9년부터 위탁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1)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 규정

1) 안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6조의3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u>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u> (이하 “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3항)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 관한 사항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2 신설(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	-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 <u>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수행 경비 지원</u>
2	안 제16조의3 신설(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에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개요

-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²⁾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현행법 제 16조³⁾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시행중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 유진 활동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지원)하는 제도
 - (지원절차)
 - － 지자체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서 제출 → 자체 심사(추진협의회) 및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 활동개시 →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활동) 식생 군락 조성·관리, △하천 정화, △산책로 조성, △야생동물 먹이 제공, △친환경 경작 등
- ※ [참고자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참고

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3) 법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안 제16조의2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안 제16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본 추계는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기준 1억원으로 예상됨

[표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원경비 내역: 2026년 기준

(단위: 원)

항목	주요내용	산출근거	예산
합계	1+2+3+4의 합계	—	100,000,000
1. 인건비	—	—	58,700,000
— 책임연구원	사업유형 발굴 및 총괄 관리	3,622,585원×1명×12월×10%	4,300,000
— 연구원	사업 컨설팅, 계약 및 기부금 관리, 참여 실적 인정 등	2,777,750원×2명×12월×50%	33,400,000
— 연구보조원	수요 조사, 참여자 등록 관리, 협의체 구성 등	1,856,832원×2명×12월×47%	21,000,000
2. 기본경비	—	—	14,380,000
— 여비	대상지 발굴 및 업무협의 목적 출장 등	50,000원×5명×40회	10,000,000
— 회의비	실무 회의, 용역(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30,000원×5인×7회	1,050,000
— 인쇄비	회의자료 및 외부 홍보자료 등	14,000원×15부×3회	630,000
— 전문가 자문비	연구용역 보고회 등	300,000원×3명×3회	2,700,000
3. 사업수행경비	—	—	22,000,000
— 연구용역	사업유형발굴 및 모니터링 등	22,000,000원×1식	22,000,000
4. 일반관리비	—	(인건비+기본경비+사업수행경비)의 6.0% 이내	4,920,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제도 시행 경과에 따라 기업 참여 및 사업수가 초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업무위탁경비도 초기 대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따라 초기 3년(2026~2028년)간은 2026년 수준의 업무수행 경비를, 2029년 이후에는 2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환경부 제출자료)
※ 추계기간 동안 지원센터의 업무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임

□ 추계결과,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원으로 추계됨

[표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경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항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59	59	59	118	118	413
기본경비	14	14	14	28	28	98
사업수행경비	22	22	22	44	44	154
일반관리비	5	5	5	10	10	35
합계	100	100	100	200	200	700

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제도 시행 경과에 따라 기업 참여 및 사업수가 초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9년부터 위탁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환경부 제출자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 (개요) 지자체가 민간(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 유진 활동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지원)하는 제도
- (근거) 「생물다양성법」 제16조
- (목적) 생태계서비스 유진·증진 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보전 효과 창출
-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서 제출 → 자체 심사(추진협의회) 및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 활동개시 →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활동) △식생 군락 조성·관리, △하천 정화, △산책로 조성, △야생동물 먹이 제공, △친환경 경작 등
- (대상지역) 각종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의2)

- (법) ① 생태·경관 보전지역, ② 습지보호지역, ③ 자연공원, ④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⑤ 야생생물 보호구역, ⑥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⑦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⑧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 ⑨ 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⑩ 국제습지협약등록습지, ⑪ 상수원보호구역, ⑫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⑬ 수변구역

○ (제도 경과)

- ('02~'20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국고보조사업) 「자연환경보전법」 개정('97.8)으로 제도 도입, 철새 보호활동 중심('02년 3개 지자체 → '20년 25개)
- ('20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생물다양성법」 개정('19.12. 개정 / '20.6. 시행)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변경
 - * 기존 제도의 확대·개편
- ('21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국고보조사업) '지불제' 명칭으로 국고보조사업 개시('21년, 27개 시·군)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원 현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원 현황: 2022~2024.11 >

(단위: 백만원)

지역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시도명	시군명	사업비 계	국비 (30%)	지방비 (70%)	사업비 계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비 계	국비 (50%)	지방비 (50%)
합계		7,115	2,354	4,761	7,476	3,838	3,638	7,906	4,038	3,868
부산광역시	본청	100	50	50	100	50	50	100	50	50
인천광역시	강화군	60	18	42	60	30	30	60	30	30
경기도	안산시	60	18	42	60	30	30	60	30	30
경기도	고양시	107	32	75	102	51	51	102	51	51
경기도	파주시	110	33	77	140	70	70	140	70	70
경기도	김포시	150	45	105	150	75	75	150	75	75
경기도	화성시	43	13	30	44	22	22	44	22	22
경기도	연천군	80	24	56	230	115	115	230	115	115
경기도	여주시	13	4	9	10	5	5	10	5	5
강원도	철원군	1,100	330	770	1,100	550	550	1,100	550	550
충청남도	서산시	467	140	327	460	230	230	460	230	230
충청남도	당진시	100	30	70	160	80	80	160	80	80
충청남도	서천군	267	80	187	260	130	130	260	130	130
충청남도	홍성군	123	37	86	126	63	63	126	63	63
충청남도	예산군	107	32	75	100	50	50	100	50	50
전라북도	군산시	400	120	280	400	200	200	400	200	200
전라북도	익산시	167	50	117	180	90	90	180	90	90
전라북도	김제시	333	100	233	320	160	160	320	160	160
전라북도	고창군	167	50	117	166	83	83	166	83	83
전라북도	부안군	110	33	77	106	53	53	106	53	53
전라남도	순천시	1,333	400	933	1,360	680	680	1,360	680	680
전라남도	해남군	217	65	152	216	108	108	216	108	108
전라남도	진도군	147	44	103	160	80	80	160	80	80
전라남도	신안군	67	20	47	60	30	30	60	30	30
경상북도	구미시	80	24	56	84	42	42	84	42	42
경상북도	문경시	85	85		60	30	30	80	40	40
경상남도	창녕군	200	200		200	200		170	170	
경상남도	창원시	500	150	350	540	270	270	540	270	270
경상남도	김해시	200	60	140	200	100	100	200	100	100
경상남도	창녕군	217	65	152	216	108	108	216	108	108
경상남도	창녕군	0	0	0	100	50	50	100	50	50
경상남도	고성군	0	0	0	0	0	0	40	20	20
제주도	서귀포시	7	2	5	6	3	3	6	3	3
제주도	본청	0	0	0	0	0	0	400	200	200

※ '23년부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30% → 50%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형태 및 보조율(%)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1831-304)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직접, 보조(50%)	보호지역·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과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계약체결 및 정부와 지자체장이 보상 지급	2,754	2,754	4,238	4,238	4,438		4,438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직접, 보조(50%)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 및 서식지 관리	6,241	6,377	6,721	6,596	7,221		7,456
	멸종위기종 조사·보호	직접(위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전국적인 분포와 개체군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950	1,098	1,849	1,798	1,947		1,634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직접(위탁)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과 상업적 이용 확산에 따른 생태계 위해성 및 영향평가 등의 조사·검증	130	130	130	130	130		130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보조(50%)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시설 설치비 지원	2,325	2,325	5,689	5,689	2,600		3,879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형태 및 보조율(%)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보조 (지자체 30%, 민간 50%)	자생력을 상실한 멸종위기 종에 대해 서식지 외에서의 체계적인 증식·복원을 위한 경비 지원	2,481	2,481	2,481	2,481	1,588	—	1,885
	외래생물·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직접, 보조(50%)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및 위 해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 성 평가·안전관리 등을 통 해 외래생물의 확산으로 인 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6,323	5,792	6,691	6,525	6,971	—	6,901
	생물다양성변화관측 네트워크 운영	직접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를 운영 하여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분포도 작성과 분포변화 미 래예측 연구	372	313	376	394	2,681	—	662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직접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관련 법정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34	27	35	32	42	—	44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	직접	『야생생물 보호법』 과 『동물 원 수 족 관 법』 개 정 (’23.12.14. 시행)에 따른 토대 마련 연구 용역 추진 등을 통해 동물원 관리 및 동물 복지 제고	200	121	400	303	846	—	666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형태 및 보조율(%)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직접	야생동물 통합 관리·대응을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535	839	537	529	484	—	437
	생물자원보전 인프라 확대 구축	직접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육상 생물자원 발굴·수집·연구를 통해 국가 생물주권 확보, 국립DMZ 평화생물자원관(가칭) 건립	—	—	300	221	150	—	300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 취득	직접	곰 사육 종식('26.1.~) 및 동물원 이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제한('23.12.~)에 따른 야생동물 유기·방치 증가에 대비하여 보호시설 설치	—	—	—	—	—	—	84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